# 경리인코

## 회사의 제품을 임직원에게 저가 판매시의 회계 및 세무처리

상담실 백종훈 차장

'직원할인'이라는 용어로 통용되는 임직원에 대한 저가 판매는 임직원에 대한 혜택적 제도로서 엄밀하게는 상거래에 해당하므로 회사입장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회계 및 세무처리의무가 수반된다.

하지만 거래의 특성상 회계상으로는 별다른 문제의 소지가 없으나, 세무상으로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한데, 임직원에 대한 할인판매 거래의 세무·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 임직원에 대한 저가 판매도 회계상 매출로 반영함

임직원에게 소비자가격에 비해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실제 가격보다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결과적으로는 유상판매, 즉 매출에 해당되므로 회계처리는 매출로 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계처리 과정에서는 매출가액을 원래 판매가격인 소비자가격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할인이 적용된 금액으로 반영하여야 하는지와 원래 판매가격인 소비자가격으로 반영했을 경우 소비자가격과 할인가격과의 차액은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만 결정하면 된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수익인식과 측정에 있어서 매출에누리 및 매출할인이나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매출에누리란 판매시점부터 물품의 가액을 감액하여 주는 것을 의미하므로 임직원에 대한 할인판매의 경우도 매출에누리 보아 매출에누리만큼을 수익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다.

즉, 판매한 제품이나 상품의 소비자가(시가)가 아닌 실제로 판매한 가액인 할인된 가액을 매출로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된다.

◈ 시가 100,000원의 물건을 20% 할인하여 임직원에게 판매한 경우

차) 현금

80.000

대) 매출

80,000

#### 임직원에 대해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저가 판매시는 부당행위 적용됨

기업회계뿐만 아니라 법인세법도 매출에누리 및 매출할인금액을 수익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직원에 대한 할인판매의 세무상 처리방법도 특별한 사항은 없다.

다만, 법인세법은 법인세의 탈루문제 때문에 법인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가보다 너무 낮거나 높은 금액으로 거래하여 법인의 이익이 훼손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의 제품이나 상품을 임직원에게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 정만 고려하면 된다.

법인세법 통칙 52-88···3은 사용인에게 자신의 상품이나 제품의 할인 판매하는 경우로서 할인 판매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고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니며, 판매 수량이 임직원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해 소비하는 정도의 수량인 경우에는 부당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직원에게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할인되는 가격이 해당 상품이나 제품의 취득 가액보다는 높도록 하고 할인율도 너무 크지 않도록 조정하고, 임직원 개개인이 구매한 상품을 다른 사업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판매 수량을 제한하면 부당행위 문제도 해결된다.

#### ◆ 기본통칙 52-88…3【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8. 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 판매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
- 가. 할인판매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것
- 나.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은 사용인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 도의 것

2024 · 04 · 24 www.eAnSe.com 7